

(별지 제1호 서식)

감 사 보 고 서

교육부 장관 귀하
학교법인 신흥학원 이사회 귀중

사립학교법제19조제4항 및 사학기관재무·회계규칙제41조에 의하여, 학교법인 신흥학원(신한대학교)의 2018회계연도 감사보고서를 제출하고자, 사학기관 감사업무처리 유의사항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.

감사결과 (다음의 지적사항을 제외하고는) 학교법인 신흥학원(신한대학교)의 재산상황·회계와 이사회의 운영 및 그 업무 처리는 관계 법령에 의거 적정하게(지적사항이 있을 경우 내용 명시)처리하고 있음을 사학기관 감사업무처리 유의사항에 따라 확인하였습니다.

다음 : 지적사항 내용

구 분	재산·회계감사 지적사항		이사회 운영 및 업무감사 지적사항(건)	비고 <지적사항 없는 경우 : 지적사항 없음(표기)>
	건수	금 액		
1. 법인 일반업무 관련				없음
2. 법인 수익사업 관련				없음
3. 학교 관련				없음
4. 부속병원 관련				없음
계				

붙임 : 1. 사학기관재무·회계규칙에대한특례규칙 제41조에 의거 작성하는 내부 감사보고서

2019 년 5 월 23 일

학교법인 신흥학원
감 사 오 명 화 (인)
(공인회계사 등록번호 제 4463호)

감 사 백 몽 룡 (인)

※ 공인회계사를 선임한 대학에 한하여 공인회계사 등록번호 기재

피감사 기관장 학교법인 <u>신흥학원</u> 이 사 장 <u>안 현 주</u> (인) 2019년 5 월 23일	피감사 기관장 <u>신한</u> 대학(교) 총 장 <u>서 갑 원</u> (인) 2019년 5 월 23일
--	---

감사보고서

학교법인 신흥학원 이사장 귀하

우리는 사립학교법 제19조제4항 및 사학기관재무·회계규칙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법인 신흥학원(신한대학교)의 2018 회계연도 이사회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 및 2019년 2월 28일 현재의 대차대조표와 동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자금계산서·운영계산서 및 각 부속명세서를 감사하였습니다. 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우리는 일반적인 감사기준을 준용하였습니다.

우리의 의견으로는(다음 사항을 제외하고는) 학교법인 신흥학원(신한대학교)의 이사회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은 적절하며 별첨 재무제표는 사학기관재무·회계규칙에대한 특례규칙에 따라 학교법인 신흥학원(신한대학교)의 2019년 2월 28일 현재의 재무상태와 동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자금수지 및 운영성과의 내용을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.

(다음 : 지적사항 있으면 나열 또는 별첨함)

2019년 5 월 23 일

학교법인 신흥학원

감사 오 명 화

감사 백 몽 홍

피감사자 (입회인)

직명 법인팀장

성명 황 보 혁